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386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23.14㎡를 인도하고, 2023. 11. 20.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